

LX세미콘 협력사 행동규범

LX세미콘 협력사 행동규범

LX세미콘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LX세미콘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국내외 협력사(이하 "협력사")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가 존중받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제정한 표준입니다.

본 규범은 노동 및 인권, 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경영시스템, 분쟁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노동 및 인권

1.1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을 체결 후 1부를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권, 근로허가증 등 정부가 발행한 공식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라도 근로자 본인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 또는 퇴직할 수 있어야 하며,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아동 노동 금지 및 유소년근로자관리

협력사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의 연령을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갖추고 만16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인 자(이하 "아동"이라 함)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 근로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실습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지원 및 관리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3 과도한 연장근로 금지

협력사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현지 법 기준 또는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연장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이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 중인 모든 사내 협력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준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할증요율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필수적인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고용기간 중 필요 시 임금에 대한 명확한 서면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합니다. 징계조치로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 파견 및 외주 인력 사용 시에는 현지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사업장의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인도적 대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 방침과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방침과 절차를 공지해야 합니다.

1.6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채용, 급여, 인센티브 지급 및 승진,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포함한 고용 관행에 있어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및 표현, 출신 민족·국가, 장애여부, 임신여부, 결혼여부, 종교, 정치성향, 또는 사회적 신분, 은퇴 군인, 기밀 유전정보, 질병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나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 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7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 시위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

2.1 산업안전

협력사는 안전보건 위험요인(화학물질, 전기 및 다른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위험 등)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프로세스 또는 유해물질(material) 대체, 안전한 공정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와 안전작업절차(잠금/차단장치)를 통해 잠재된 위험요인을 파악, 평가, 완화하고, 지속적인 산업보건 및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험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대상 근로자가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근로자는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직무 관련 안전보건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잠재적 비상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대책과 대응절차에는 비상상황 보고, 비상상황 전파 및 대피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비상대응계획에는 화재감지 및 진압장비, 적치되어 있는 장애물 등 방해요소가 없는 대피로 및 비상구, 비상 연락망 및 복구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구는 대피방향으로 상시 개방 가능해야 하고,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는 최소 연 1회 이상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것 중 더 엄격한 기준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상집결지는 실내·외에 모두 마련하고, 위치를 표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피훈련 후에는 평가(대피시간 측정 및 개선사항 파악)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피훈련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식당, 기숙사 등 포함) 내 다양한 상황(주간/야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2.3 산업 재해와 질병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사건/사고 보고 2) 부상과 질병사례의 유형분류 및 기록 3) 필요한 치료 제공 4) 근본 원인 분석 후 시정 및 예방 조치 수립(근로자 교육 포함) 5) 치료 후 사업장 복귀 지원

2.4 산업 보건

협력사는 관리 체계에 따라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은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제거하거나 제어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보호구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 교육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2.5 육체적 과중 업무 관리

협력사는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2.6 기계 설비 안전유지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모든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안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벽과 안전장치(개방 시 설비가동 중단, 인터록)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2.7 위생, 음식, 주거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저장공간 및 식사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 온수, 난방 및 환기 시설, 소지품 및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 보안 보관함,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8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은 업무 시작 전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공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3. 환경

3.1 환경 관련 인허가와 보고

협력사는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등록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최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2 오염예방과 자원사용 저감

협력사는 생산, 유지보수 및 공정의 변경, 대체 원료의 사용, 자원 보존, 원자재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3 유해화학물질

협력사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시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과 기타물질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재사용 및 폐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3.4 고형 폐기물

협력사는 고형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식별, 관리, 저감 및 폐기해야 합니다.

3.5 대기오염

협력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과 공정에서 발생한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규제에 따라 관리/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설비의 처리효율을 규칙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3.6 제품 함유물질 규제

협력사는 제품 및 제조공정상의 금지/제한물질 그리고 재활용/폐기 관련 표지(라벨링) 법규와 고객사의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3.7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각각 취수, 사용, 배출 시 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폐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상시 기준치 내로 배출하도록 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윤리

4.1 정도경영 준수 및 부당 이익 금지

협력사는 LX세미콘의 정도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이나 뇌물수수, 횡령 및 특정 가치를 약속/제안하거나 허가/수령하는 모든 부패 행위를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하며 제재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적용가능한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2 정보 공개

협력사는 관련 법규 및 업계 관행에 따라, 노동, 보건안전, 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정보의 보관 및 폐기 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4.3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LX세미콘 뿐 아니라 LX세미콘의 고객사/협력사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4.4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사는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와 공정거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5 신원 보호와 보복 금지

협력사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6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경영시스템

5.1 경영진의 준수 의지 선언과 책임

협력사는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 관련 규범을 준수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방침 성명서를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5.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협력사는 경영시스템 또는 관련 프로그램 이행에 책임을 갖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책임과 권한을 지닌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5.3 법규와 고객 요건 대응

협력사는 본 규범을 포함하여 관련 법규 및 고객사의 요건을 파악, 모니터링을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4 리스크 평가와 관리

협력사는 환경, 안전보건, 노동관행 및 윤리적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각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5.5 개선 목표

협력사는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목표, 목표치 및 실행계획을 문서화하고,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5.6 교육

협력사는 방침,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5.7 의사소통

협력사는 방침,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 협력사,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5.8 임직원 참여

협력사는 효과적인 고충처리 시스템을 포함하여 본 규범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임직원 의견취합 및 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5.9 문서와 기록

협력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5.10 협력사 책임

협력사는 본 규범의 요건을 하위 협력사에 전달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요청에 따라 협력사에 대해 제3자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6. 분쟁광물

협력사는 불법적이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비윤리적 방법을 통해서 조달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련 정책 내에 분쟁 광물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LX세미콘으로 공급하는 원자재, 부품 및 제품에 사용된 광물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이하 3TG)이 콩고 민주공화국 또는 인접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 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원 또는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사에서 LX세미콘에 공급하는 원자재, 부품 및 제품 내 3TG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LX세미콘 및 LX세미콘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3TG 광물의 원산지, 제련소 및 정제회사의 정보를 포함한 실사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